

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문서번호 : 인개택총588-1호

공고일자 : 2018년 7월 31일

공고기간 : 2018년 7월 31일 ~ 2018년 8월 10일

게시판 : 각 충전소

공 고 문

정관 제12조(임원), 제13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), 제14조(선출방법) 3항, 제15조(임기)1항, 선거규정 제20조(감사선출)에 의거하여 감사 선출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선출인원 : 2명
2. 임 기 : 2년(2018. 7. 1 ~ 2020. 6. 30)단, 2020년 상반기 감사까지
3. 선출방법 : 정관 제14조(선출방법)3항, 선거규정 제20조(감사선출)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선출

4. 후보자 자격조건

정관 제13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조건)

1항 “조합원이 아니면 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단, 전무이사는 비조합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”

2항 “본 조합의 임원 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과 대의원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(임원,대의원:만5년이상,이사장:만7년이상)근속 조합원으로 정한다.”

3항 “선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.”

4항 “임원 및 대의원이 된 후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”

5항 “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.”

① 5대 강력범죄(살인, 강간, 강도, 마약, 약취유인)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(집행유예 포함)이 확정된자

②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, 수뢰, 공금유용 및 횡령의 범죄 행위로 5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③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2회 이상 제기하였으나 2회 이상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최종 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

④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형사상 진정,고소,고발,소송 등을 2회이상 제기하였으나 조합 및 조합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2회이상 확정되어 최종사건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.

특별사항

정관14조(선출방법) 3항 “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출하며, 현 이사 및 대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”

5. 제출서류

- ① 감사후보등록신청서(조합양식) 1부
- ② 입후보자 이력서 1부
- ③ 조합비 완납증명서(조합양식) 1부
- ④ 재직증명서 1부
- ⑤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
6. 후보자 등록 기간 : 2018. 8. 9(목) ~ 8. 10(금) 17:00(대리접수 불가)

7. 선거일 : 2018년 8월 21일(화) 대의원회의 예정

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

